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1-12호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2조 제4항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1-8호(2021.4.16.)로 고시한 우체국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·고시합니다.

2021. 4. 28.

경인지방우정청장

우체국 이전 변경에 관한 고시

1. 우체국 이전

가. 변경내역

국 명 (총괄국명)	관서 등급	변경내역(업무개시일)		비 고
		당초(~에서)	변경(~으로)	
정 남 (화성동탄)	별정국	2021. 4. 26.(월)	2021. 5. 3.(월)	신청사 준공승인 지연에 따른 업무개시일 변경

나. 이전내역

우체국명	관서 등급	주 소		업무개시	우편·금융용 국기호
		~ 에서	~ 으로		
정남	별정국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42-16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 195	2021. 5. 3.(월)	변동없음

○ 이전 사유 : 신청사 완공에 따른 청사 이전

2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2021. 5. 4.(화)까지 유효